

4.4.8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제정 2004. 04. 06.

개정 2007. 05. 29.

개정 2017. 09. 14.

개정 2019. 04. 22.

개정 2019. 12.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원 정관과 초당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력단”은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초당대학교의 소속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9. 초당대학교와 초당대학교의 교지 안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간의 상호 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초당대학교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제4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연구기획팀, 협약팀, 정산팀, 구매관리팀, 검수팀, 재무회계팀, 감사팀 및 부설기관을 둔다. <개정 2019.12.17.>

② 삭제 <2019.04.22>

③ 부설기관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4.22>

제5조의2(업무분장) 연구기획팀, 협약팀, 정산팀, 구매관리팀, 검수팀, 재무회계팀, 감사팀의 업무는 [별표1]과 같이 분장한다.<개정 2019.12.17>

제5조의3(학교기업)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학과,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회계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9.04.22>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기획연구처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개정 2017.09.14., 2019.04.22>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 호 개정 2019.04.22〉

제8조(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산학협력위원회

제9조(산학협력위원회구성) ① 이 대학교와 산업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타 연구 기관 등과 각종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한 각 운영기관장
2.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3. 기업체의 대표
4.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5.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③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운영기관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사항)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
2. 산·학·연·관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3. 산·학·연·관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구축
4. 기타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산학협력보상금)

-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의 재원의 수입 및 기타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산학협력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성과급) ①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한 본교의 교원에게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급 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9.04.22〉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산학협력단 업무분장

구분	업무	비고
연구기획팀	1.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종합 기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 R&D사업 등 외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부 연구동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외부 연구비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연구과제 인프라(공간, 시설물 등) 및 업무지원(대응자금 등)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력단 법인 인감 관수에 관한 사항 9. 연구인력 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11.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 및 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12.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연구비 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협약팀	1. 산학연 협약에 관한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 R&D사업, 산학연 협약사업 등 외부연구과제 협약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학교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등 보유기술 사업화에 관한 사항 6.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정산팀	1. 교내 연구관리 및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부 연구비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관리 및 연구비 집행·정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에 관한 사항 6.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구매관리팀	1. 구매, 공사, 일반용역, 임대차, 자산매각 및 수리 등 계약 체결 2. 고정자산, 재고자산 관리 및 기록 유지 3.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검수팀	1. 산학협력단 물품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재무회계팀	1. 산학협력단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수입·지출 및 세무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간접비 산출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5.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감사팀	1. 산학협력단 관련 감사 2. 일상감사, 정기감사 및 비정기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3.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